

의안번호	2215873
의 퇴 인	신정훈의원
회 답 일	2026.3.5.
추계번호	26D0065

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계획 수립, 기본사회위원회 및 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30억 5,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2억 3,400만원(연평균 6억 4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계획 수립 (안 제12조 및 안 제14조)	3,009	—	—	—	—	3,009	602
기본사회위원회 설치 (안 제16조·제17조)	25	25	25	25	25	125	25
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(안 제20조)	20	20	20	20	20	100	20
합 계	3,054	45	45	45	45	3,234	647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~안 제8조(기본적 생애 소득의 보장 등)	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2조(기본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	-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
3	안 제13조(부문별 기본 사회 계획의 수립 등)	-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기본사회 계획을 수립함 -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4조(시·도별 기본 사회 계획의 수립 등)	-시·도지사는 해당 시·도의 기본사회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시·도 기본사회 계획을 수립함 -시·도지사는 시·도 기본사회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·도 기본사회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16조 ~안 제17조(기본사회 위원회 등)	-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6	안 제20조(시·도 기본 사회위원회 등의 설치· 운영)	-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를 둠 -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 기본사회지원단을 둠	의무규정
		-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의 협의·조정을 위하여 시·군·구 기본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21조(위원회의 사 무기구)	-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본사회기획단을 둠	의무규정
8	안 제25조(통계 분석 및 조사·연구 등)	-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수집 및 관리하고,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,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26조 ~안 제27조(시범사업 의 실시 등)	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 ~안 제8조(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2	안 제12조(기본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	○	
3	안 제13조(부문별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등)	—	미대상: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문별 기본사회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각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4	안 제14조(시·도별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등)	○	
5	안 제16조 ~안 제17조(기본사회위원회 등)	○	
6	안 제20조(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 등의 설치·운영)	○	
7	안 제21조(위원회의 사무기구)	×	기본사회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·인력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8	안 제25조(통계 분석 및 조사·연구 등)	×	조사 및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스템 구축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9	안 제26조 ~안 제27조(시범사업의 실시 등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2조에 따른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안 제14조에 따른 시·도 기본사회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 -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
- 안 제16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40명으로 가정하고, 이 중 민간위원은 25명으로 가정함
 -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¹⁾으로 가정
 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안 제20조에 따라 각 시·도에 설치되는 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30명으로, 이 중 민간위원 수는 20명으로 가정하고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을 추계함
 -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계획 수립(안 제12조 및 안 제14조)

- 안 제12조 및 안 제14조에 따라 기본사회 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 30억 9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(최근 5건) 예산 평균금액³⁾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에 비용이 발생
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(2026.7.1. 시행예정)를 반영하여 16개 시·도에서 시·

1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).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	2.3	2.0	1.9	2.0	2.0	2.0	2.0

3)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(자료: prism.go.kr)

-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90백만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27백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98백만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37백만원),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65백만원)
 -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도 기본사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기본사회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(안 제12조)		177	-	-	-	-	177
시·도 기본사회 계획 수립 (안 제14조)	설치 시·도 (a, 개)	16	-	-	-	-	-
	시·도당 소요비용 (b, 백만원)	177	-	-	-	-	-
	소요비용 (a×b, 백만원)	2,832	-	-	-	-	2,832
합 계		3,009	-	-	-	-	3,00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기본사회위원회 설치(안 제16조 및 안 제17조)

□ 안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,5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2,500만원으로 추계됨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5명의 민간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 - (연간 소요) 민간위원 25명 × 25만원 × 연 4회 = 2,500만원

[표 3]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사회위원회 설치 (안 제16조·제17조)	25	25	25	25	25	1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(안 제20조)

□ 안 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,000만원 등 5년간 총 1억원으로 추계됨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(2026.7.1. 시행예정)를 반영하여 16개 시·도에서 시·도 기본사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명의 민간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 - (연간 소요) 민간위원 20명 × 25만원 × 연 4회 = 2,000만원

[표 4] 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(안 제20조)	20	20	20	20	20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0억 5,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2억 3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계획 수립 (안 제12조 및 안 제14조)	3,009	-	-	-	-	3,009
기본사회위원회 설치 (안 제16조·제17조)	25	25	25	25	25	125
시·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(안 제20조)	20	20	20	20	20	100
합 계	3,054	45	45	45	45	3,23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